

政府의 保健要員 陽性化 및 統合化方針에 對한 提言

황 순석
(충남도청 가족계획과장)

緒論

一線保健要員의 正規화에 對하여는 要員自身 들이나 側近者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었으며 10餘年間 観心있는 分들의 繼續의 努力으로 이제 結實을 엮어 그 念願이 이루워지려는 문턱에 到達한것 같아 작은 報酬에 많은 奉仕를 하여 온 要員들을 爲하여 非多幸스러운 일이다.

保健要員의 統合運營 또는 세要員의 重複의 業務管理, 時間의 節約, 住民들에 對한 良質의 서비스等을 目的으로 할때 理想의 運營方法이 라고 生覺된다. 그러나 上部組織이 一元化되지 않은채 下部만 統合하여 運營하게 된다면 많은 問題點이 惹起될 것으로 生覺되며 各組織 및 書式 等의 一元화가 된다면 보다 나은 成果를 舉收할 수 있을것으로 生覺된다.

○ 그럼 먼저 保健要員의 陽性化에 따른 問題點을 生覺해본다.

高令者の 特別採用이 不可하여 長期勤務者の受惠策이 없어진다.

即 保健要員이 正規化되면서 그 採用에 있어 特別採用試驗에 依據하여야 될것인바 이의 應試資格은 地方公務員任用規則 第9條에 依하면 4級職은 20~45세, 5級職은 18~40세로 高令이 制限되어 있으므로 現職要員中 年令제限으로 任用이 不可能한 對象이 全國적으로相當한 數에 达하고 있는 것으로 料된다.

이들은 過去 事業初創期부터 雜給職으로 身分保障이 未定한데 政府事業을 推進하기 爲하여, 住民保健向上을 爲하여 애써온 功勞者라 할 수 있으며 現在에나 未來에도 事業推進에 主軸이 되어 움직여 줄 수 있는 對象임에도 이들의 採用이 不可하다면 事業推進에도 莫大한 損失일뿐 아니라 特히 家族計劃事業에 있어서는 家庭主婦를 對象으로 勸獎해야 하므로 年少한 未婚의女性으로는 勸獎하기 어려운 問題點이 許多할 것으로 이들의 解決策이 絶對的으로 重要할 것이다.

○ 陽性化에 따른 長點

身分保障으로 因한 安堵感으로 離職率이 減少될 것이며 使命感을 가지고 맡은바 任務에 充實할 것이다.

○ 統合方針

統合方針은 가장 理想의 方法으로 生覺된다. 그 長點으로는 單一事業으로 分類推進할 때에는 한家庭에 세 要員이 各己擔當業務을 目的으로 訪問하게 됨에 따라 住復距離에 所要되던 時間을 한 사람이 多目的으로 訪問하므로서 1/3로 減縮시킬 수 있으며 事務室에서는 한家庭의 記錄物을 세 要員이 各者作成 保管管理하여야 하던 것을 家庭單位로 묶어서 管理하게 됨으로 時間의 節約은勿論 業務의 重複性을 避할 수 있다. 또한 住民側에서도 한家庭의 保健問題를 가지고 業務別로 세 사람의 要員을 찾거나 세 사람의

訪問을 받아야 하면 것을 한 사람만의 接觸으로 더욱 親密感을 가지게 되며複雜을避하게 된다.

그러나 세 要員이 統合할 境遇于先 세 要員이 共히 이에 따른 專門知識을 得하여 萬物博士라는 呼稱을 받을 수 있도록 定期 또는 隨時敎育이 絶對로 要求된다.

한편 短點이라면 山間奧地 單獨訪問이 至難할 것으로思料된다.

即 保健要員이 女性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이 訪問을 忌避하거나 訪問回數가 적어 住民들에게 不均等한 서비스가 憂慮된다.

○ 有資格要員 配置時 統合의 問題點

家族計劃과 母子保健은 同質의 事業이면서도 統合運營이 至難하다.

即 母子保健要員이 助產員으로 介助를 實施할 境遇, 全 地域을 管理하여야 될 것으로 또한 介助에 所要되는 時間을勘案할때 다른 要員과 同一한 地域分擔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세 要員을 看護補助員으로 任命할 境遇間接 介助에不過할 것이며 質的인 서비스 事業은 期待할 수 없다.

結論

陽性化에 있어서는 高令者의 救濟解決의 可否가 論해져야 될 것이며 統合化에 있어서는 于先政府에서 統合해서 事業을 實施할 수 있도록 發掘되는 問題點을 解決하는것이 急先務라 하겠으며 指導 監督體制가 中央으로부터 一元化되어 市, 道, 郡, 邑, 面에 이르기까지 一元化되고 諸般記錄物의 簡繁化, 報告樣式 等이 統一되고 有資格要員을 確保, 首席要員으로 두 要員을 管理하여 良質의 서비스事業을 展開하므로서 國民保健이 向上될 것이다.

保健要員의 正規化 統合方針에는 여러가지 長短點이 따르나 보는 사람의 觀點에 따라 意見과 結論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年次의 으로 遂行해 나가면서 改善點을 模索 開發해 나가면 良質의 サービス事業으로 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다. 統合運營을 爲한 具體的인 計劃과 與件이 達成되지 않은 狀態에서의 統合은 오히려 既存事業의 隘疎만을 招來하는 結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갖게된다.

이 달의 수중간행물

- 간호학회지, 제10권 제 2호, 대한간호학회
- 풀봄반, 제 2호, 성신간천 학도호국단
- 과학과 기술, 제13권 11호(11월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국민영양, 11월호, 대한영양사회
- 근무시간 활용과 가정방문 활동내역에 관한 조사연구, 신상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대한병원협회지, 제 9 권 11호(11월호),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18권 12호(12월호), 대한치과의사협회
- 동아약고, 제141호(1월호), 동아제약(주)

- 병원표준화 심사요강—1981년도, 대한병원 협회
- 보건세계, 12월호, 대한결핵협회
-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자원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보건정책 세미나 보고서, 1980.11, 한국개발연구원
- 복지, 통권 97호(12월호), 대한나눔회
- 사회복지, 겨울호, 198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순천향대학 논문집, 제 3 권 3호, 1980, 순천향대학
- 심전도 간호교육교재, 1980, 육군본부
- 아동복지, 통권 32호, 1980 겨울, 홀트아동복지회
- 월간간호, 통권 47호(2월호), 월간간호사
- 의료보험, 통권 30호(1월호), 전국의료보험협의회